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7층

TEL : 02-3774-5000 / fax : 0502-797-5058 / E-mail : cfemaster@cfe.org

❖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과 낮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과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새로운 기술 발전에 힘입어 등장하는 신산업은 늘 기존 산업과의 충돌, 이익집단의 반발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또, 기존 산업질서에 맞게 구축돼 있는 각종 제도적 틀이 신산업의 연착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럴 때 국회는, 이익의 충돌을 중재하고 새로운 법 질서를 제시해 신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책임일 이행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미처 풀지 못한 여러 혁신산업 육성 숙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리걸테크 산업을 둘러싼 갈등 요인 해소 등이다.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실행, 이익단체에 의한 부당한 변호사 징계 무효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의 성적표는 초라한 실정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의 일부 의원들은 리걸테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차세대 혁신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산업별로 입법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리걸테크 육성

이른바 ‘로톡 사태’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산업을 둘러싼 기존 대한변호사협회와 리걸테크 기업 간의 충돌은 이미 오래된 사회적 갈등 이슈다. 특히 변호사를 법률소비자에게 소개하는 ‘광고’ 행위를 대한변협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로톡 등 리걸테크 기업의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해 소비자를 유치하고자 한 변호사들을 징계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무부가 해당 징계를 무효로 결정했지만 여진이 남아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다음과 같은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소영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4. 6. 11 대표발의)

-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1) 방송법 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2) 신문, 인터넷 등 언론 매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어플리케이션 포함) 4) 지능정보서비스 5) 전광판, 벽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로 특정
- 변호사에게 금지된 광고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변호사 등의 광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

이소영 의원은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더 이상 변협은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임의로 금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권철승 의원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24. 7. 18 대표발의)

-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수립과 시행, 기존 법률분야 종사자와 리걸테크 기업 간의 상생 대책을 위한 근거 마련
- 리걸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혼란을 방지

화물·여객 운송 사업 자율주행 기능 활용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여건에 발맞춰,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새벽·심야노선, 벽지노선 등 일반 운전자가 선호하지 않는 여객·화물 운송에 자율주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

권영세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9. 23 대표발의)

- 여객·화물 운송사업자가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운송 사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의무 등을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푸드테크 산업 육성

한편, 차세대 혁신산업의 대표 분야라고 볼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있었다.

안상훈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24. 10. 31 대표발의)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개념을 정립,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규제 문제를 해소
- 공익적 목적으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규 근거를 마련
-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한 시범사업과 함께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설"

김선교 의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4. 6. 7 대표발의)

- "푸드테크 산업 관련 각종 법규를 정비하고 정부, 지자체 등의 육성 책무를 명시화
-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는 경우 적극적인 처리 의무 법제화
- 푸드테크 관련 첨단산업 기술 혁신, 전문인력 양성, 해외 수출 등을 지원"

분석 및 합의점

정부와 정치권은 '제2의 타다'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두터운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산업자의 집단적 반발, 선거 상의 불리 등을 이유로 혁신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기본적인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런 여건일수록, 개별 의원보다는 여야 정당 차원의 협력을 통해 규제 철폐에 있어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리걸테크 산업 등 미래 먹거리가 달린 혁신 산업은, 국민 삶의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2대 국회마저 차세대 산업 육성 시점을 실기한다면, 결국 해외 글로벌 공룡 기업의 국내 시장 침탈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 우량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22대 국회가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